



## 명쾌한 수다

퇴직 후 전 동료가 차린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전 회사의 자료를 유출, 사용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를 퇴직하여 전 직장 동료 B씨가 세운 경쟁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A씨는 전 회사를 퇴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각 파일들을 기반으로 B씨의 회사의 소스코드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 원심판결

이에 원심에서 B씨가 A씨와 이 사건 별도의 14번 파일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모, 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B씨에게 이 사건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A씨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별도의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 가담한 B씨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이 사안에 대해서 크게 ‘퇴직 후 사용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누설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위 사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두 가지의 성립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 위반 성립 여부

첫째,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회사로부터 무단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 및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반출하거나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 등을 퇴사시 반환·폐기의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반환·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2]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들을 회

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 또는 파일들의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판례는 『회사 관련 파일에 관한 보안 준수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서약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 위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고,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자료의 반출을 용인하고 있음에도, 회사직원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반출하고, 퇴사시에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위 파일들 중 일부를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 또는 파일들의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퇴사한 직원 A씨는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일어난 일로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게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B씨)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 따라서 A씨의 동료 B씨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 불가능합니다.

둘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립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가 파일을 참고하여 소스코드를 제작하고,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A씨와 B씨 모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영업비밀누설 등)

⇒ A씨, B씨 모두 위반죄 성립

퇴직 이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 퇴직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와 구별된 독립된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B씨가 퇴사한 A씨가 퇴직 이후에 이미 갖고 있던 회사정보자료를 유출·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

⇒ B씨의 업무상배임죄위 공범 불성립